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4. 장경태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7. 5.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3.)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12.3.)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5.12.3.)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장경태의원)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적국이나 외국에게 유출한 경우 현행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법률들은 간첩죄 대비 처벌이 약해 외국기업이 아닌 적국, 외국 정보기관 등에 의해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경우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간첩죄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적국, 외국에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적국, 외국에 의한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우리나라 기술과 산업을 보호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안 제9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현재 국제안보환경은 우방국 간에도 치열하게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만큼 다원화되어 국가의 외적 안전이 반드시 적국에 의해서만 침해받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간첩죄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기밀 탐지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됨.

개정안은 현행 적국을 위한 간첩죄(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보다 낮게(15년 이하의 징역) 규정하고 있음. ‘외국’을 위한 간첩의 경우 그 불법성이나 국익침해의 정도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적국’을 위한 간첩과 법정형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상 외국을 위한 군사기밀누설죄도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일한 법정형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별도로 ‘국가핵심기술’을 간첩죄의 행위객체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외적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은 ‘국가기밀’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간첩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으며,

안 제98조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을 단순히 ‘적국·외국에’ 유출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상대 국가 등과의 의사연락이 없는 경우도 간첩죄와 동일한 형을 과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위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